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정경두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종료되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발효되지 아니하여 2020년 4월 1일부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 중 일부에게 무급휴직이 시행됨.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이 지연되어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의 생활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는 2020년 4월 29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함.

이에 따라, 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정, 지급 방법, 지급 기간, 지급 신청 등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금의 산정(안 제2조)

법 제3조에 따라 지원금 지급액 산정을 위한 필요한 기준 등 세부사항을 명시함.

나. 지급 기간(안 제3조)

법 제3조를 고려하고, 관계 부처 협의에 따른 지원금 지급 기간을 명시함.

다. 지원금의 지급 신청(안 제4조)

지원금의 지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신청서, 첨부 서류, 신청 기한 등을 명시하여 신청인들이 지원금 신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

라. 지급 결정 및 결정의 통지(안 제5조)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업무 절차를 명시하여 신청인들이 지급신청서 제출 후 지급 절차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원금의 지급 시기(안 제6조)

지원금을 월별로 지급 및 1개월 미만 기간에 대한 지급 근거를 제시함.

바. 지급심사위원회 운영(안 제8조)

지원금 지급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 필요한 경우 「지급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지원금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3조)

최초 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하기 위해, 이 영 시행 당시 무급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지원금 지급 신청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명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 6.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제1조 (목적) 이 시행령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금의 산정)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은 무급휴직 시행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일지원금액은 제1항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서 정한 상한액에서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일지원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고용보험법」 제45조제4항에서 정한 최저기초일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일지원금액으로 한다.

제3조 (지급 기간)

지원금은 무급휴직 시행일로부터 무급휴직 종료일까지 지급하되, 27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지원금의 지급 신청)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직증명서
 2.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받은 무급휴직 최종 결정 통지서
 3. 평균임금 산출을 위한 증빙서류(무급휴직 이전 최근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
 4. 지원금 수령을 위한 신청인 예금 계좌 정보(통장사본)
- ② 신청인은 무급휴직을 시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지원금 수급대상자는 무급휴직이 종료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금 수급 상실신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 결정 및 결정의 통지)

- ① 국방부장관은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

의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그 정보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결정기간의 연장사유와 결정 예정기한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원금 지급 결정 연장통지서에 따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지원금 지급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증 또는 조사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금의 지급 시기)

① 국방부장관은 지원금 수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지원금을 월별로 지급한다.

② 지원금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해당 월에 무급휴직 상태인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7조 (지원금의 지급 방법)

국방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을 신청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 (지급심사위원회 운영)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급심사위원회

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1. 지원금 지급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2. 지원금 환수
3. 그 외 지원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초일액 하한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4항에 따라 산정된 일지원금액이 「고용보험법」 부칙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부칙 제8조제2항을 따른다.

제3조 (지원금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무급휴직 상태인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지원금 지급신청서[제4조 제1항]

[별지 제2호 서식] 지원금 수급 상실신고서[제4조 제3항]

[별지 제3호 서식]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제5조 제2항]

[별지 제4호 서식] 지원금 지급 결정 연장통지서[제5조 제3항]

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① 성명(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③ 현주소		
	④ 전화번호 / E-mail /	⑤ 소속 / 직급 /	
	⑥ 임용일자 / 근무기간 /	⑦ 지원금 수령 은행명 / 계좌번호 /	
	⑧ 무급휴직 기간 00.00.00. ~ 00.00.00.		
첨 부 서 류	1. 재직증명서 1부 2.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받은 무급휴직 최종 결정 통지서(사본) 1부 3. 평균임금 산출을 위한 증빙서류(무급휴직 이전 최근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		
행 정 정 보 공 동 이 용 동 의 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지원금 수급 상실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① 성명(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③ 현주소		
	④ 전화번호 / E-mail /	⑤ 소속 / 직급 /	
	⑥ 임용일자 / 근무기간 /	⑦ 무급 휴직 종료 일자 00.00.00.	
첨 부 서 류	1. 지원금 수급 상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명자료 1부(예: 무급휴직 종료 통지서)		
행 정 정 보 공 동 이 용 동 의 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지원금 수급 상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

(앞 쪽)

접수번호		결정일자	
신청인	성명(한자) ()	소속 / 직급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지원금지급기간		
결정주문 인정		결정지원금액	

귀하의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결정서와 같이 지원금 지급이 인정(부결)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지급결정에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이의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때에는 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지원금 지급 결정 연장통지서

(앞 쪽)

접수번호			
신청인	성명(한자) ()	소속 / 직급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지원금지급기간		
지원금 지급 결정 연장 사유 / 결정 예정 일자			

- 귀하의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심사 연장을 통지합니다.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결정 후 통지할 예정입니다.

국방부장관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정책관실 미국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6343, 6341